

이사회 규정

2023.04.13.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 성)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출한다.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정관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는 정관 제36조, 제37조, 제38조 내용을 준용한다.

제 3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없을 시엔 생략할 수 있다. 단, 분기당 1회 이상은 반드시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사외이사 또는 3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 조 (결의방법)

1.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제 2항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3.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구체기준 별첨자료 참조)
 - ① 신규차입
 - ②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
 - ③ 타인을 위한 대여, 보증 및 담보제공
 - ④ 출자 및 투자
5.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의 1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의 2 (긴급집행)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사전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 5 조의 3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①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의 제안
 -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③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 조 (회의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장이 정하는 기타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관계자 의견청취)

이사회 의장은 관계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써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 조 (의사록)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

제 9 조 (지원부서)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과 결의사항에 대한 관련자료 수집, 기타 이사회 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 의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 10 조 (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부 이상 조직개편
2. 연간 사업계획(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포함)
3. 도급금액 기준 5천억원 또는 5억불을 초과하는 사업의 현황
4. 리스크 관리 활동
5.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재무 리스크
(환경, 안전보건, 인권, 공급망 지속가능성, 소비자권익보호,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등)
6. 이사회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한 사항 및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이사회 평가)

이사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12.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2.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8.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12.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4.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3.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4.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5.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4. 13.부터 시행한다.

[별첨]

이사회 결의사항 구체기준(안)

구 분		구 체 기 준 (안)
신규차입	사채발행	- 당해년도 발행한도액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2.5% 이상 (단, APT등 주택자금용 차입 및 건설 공제조합 등에 출자한 범위내의차입은 제외)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 자기자본의 1.5% 이상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 자산총액의 2.5% 이상
타인을 위한 대여, 보증 및 담보제공	금전 및 유가증권 대여	- 자기자본의 5% 이상 (단, 공사 수행을 위하여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은 제외)
	지급보증 (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 등)	
	저당권,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해외건설공사 관련 Company Guarantee 발급	
출자,투자 및 신규투자사업	타법인에 대한 출자	- 자기자본의 2.5% 이상
	출자회사의 해산, 정리	- 자기자본의 1.5% 이상
	신규투자사업	- 자기자본의 2.5% 이상 (단, 순수건설업 및 관련 부대사업은 제외)

※모든 금액은 약정금액 기준임

※직전 사업연도 연말 재무제표 자기자본 및 자산총액 기준임